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이강일·김남근·박상혁

강준현 • 이연희 • 한정애

박수현 • 박범계 • 노종면

박민규 • 민병덕 • 복기왕

채현일 • 천준호 • 윤종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.5%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,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 또한,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,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「예금자 보호법」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,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기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수행해 왔으며,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,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

고 있음.

이에 따라 동 「예금자보호법」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.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 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 험료 수입이 감소하고,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 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 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 려는 것임(안 부칙 제2항). 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(법률 제10691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4128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43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중 "2024년 8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	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		
부개정법률 부칙	부개정법률 부칙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(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	② (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		
용례)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	용례)		
에 관하여 <u>2024년 8월 31일</u> 까	<u>2029년 12월 31일</u>		
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			
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			
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			
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			
는 경우에는 法律 第5492號 預			
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 제30조			
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			
규정을 적용한다.			